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맹진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95
----------	------

발의년월일 : 2018년 2월 22일

발 의 자 : 맹진영, 유 용, 김영한,
문형주, 김구현, 문영민,
최관술, 신건택, 강구덕,
박호근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조례에 인용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최신화하고 중소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전에 관내 중소기업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육성 계획의 현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법령에서 이를 삭제함(제1조)
- 나.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전에 관내 중소기업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하고 제7조제5항을 제7조제6항으로 하고 제7조제5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시책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실태조사비 ≙ 1,010,000천원

- 실태조사비 = $\sum_{i=1}^5 (\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비용 ≙ 202,000천원

- 실태조사비 : 929,000천원 × 21.7% = 202,000천원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

- 중앙정부 중소기업 2018년 실태조사비 = 929,000천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분석과 조사 자료

- 서울시 중소기업체 비율 = 21.7%

전국중소기업수(A)	서울시 중소기업(B)	비율(B/A)
3,542,350	767,399	21.7%

주 : 2016년 자료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통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이정수

☎ 02-3705-1280

e-mail : intezer@seoul.go.kr